

의안번호	제 39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1월 28일 【 제176회 】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1월 23일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사유

수도법이 개정(2005.12.2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중 조례명과 일부 내용이 조례와 불합리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 위원회 명칭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
- 2) 위원회 기능이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확대함

4. 개정근거 : 수도법 제19조의2

5. 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7. 관계법규 : 수도법 제19조의2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제안자 의견

수도법 개정 법령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명과 위원회 기능을 개정 함으로서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에 관한 자문”로 한다.

제2조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10조중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를 “수돗물 수질향상 및 수도시설의 운영 방안 등 중요한 자문”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전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행한 사항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음성군 상수도의 <u>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u> <u>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u>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u> 2.<u>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u> (신 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u>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u> 중요한 자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명 “<u>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u>” 제1조(목적) -----<u>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의</u> ----- <u>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u>-----. 제2조(기능) ----- ----- -----. 1.<u>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u> 2.<u>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u> 3.<u>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u> 제10조(통보)----- -- <u>수돗물 수질향상 및 수도시설의 운영방안 등</u> ----- -----.